

# 소 장

원 고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###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

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자 재산세 금○○○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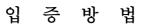
- 1.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 ◎◎아파트 ○○동○○○호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칭함)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를 근거로 금○○○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여 고지하였으나, 이는 부당합니다.
- 2.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· 사용하게 된 경위
  - 가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소외 ☆☆주식회사(이하 소외 회사라 칭함)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○○. ○. ○.까지 입주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수회에 걸쳐 일부 분양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.
  - 나. 그러나, 위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않고 20〇〇. 〇. 〇. 중순 경 건축공정 약90% 상태에서 도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

### 3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부과의 부당성

- 가.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"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(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)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,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나. 한편,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, '건축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도에 비추어 건축공정 약 90% 상태에서 도산하였다면 건축회사가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, 다만 그 이후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입주자들이 분양대금을 정산하여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지방세법제 182조제1항 단서의 "사실상 소유자"가 될 수 있을 것이나,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회사가 도산하여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거나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점유.사용하면서 권리자 행세를 하고 있다하여 곧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인 "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9두5580호 판결)고 할 것입니다.

### 4. 결 론

따라서,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와 분양대금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,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

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1. 갑 제3호증

분양계약서 사본 중도금납부서 사본 납세고지서 사본

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납 부 서

각 1부

1부

1부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 <b>***</b>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6조)		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